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40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나. 조례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서울시민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 수탁기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
- 소 재 지 : 3개 권역 선정(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 권역별 1개구 선정

구 분	자 치 구
동북권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 성북구, 중랑구
서북권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 종로, 중구
서남권	강서구, 구로,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 양천구
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서울시 저소득시민 의료서비스이용 및 공공병원 병상수급에 관한 분석」

○ 규 모

- 인력구성 : 각 센터별 5명 [센터장 1(비상근), 팀장 1, 팀원 3]
- 시설규모 : 면적 165m²이상

구 분	총계	사무실	상담검사실	대기실	교육실
설치수(실)	8	1	5	1	1
면적	165m ²	14m ²	15m ² ×5 = 75m ²	36m ²	40m ²
시설기능		직원근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힐링제공	집단교육 프로그램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이내(2018. 협약일 ~ 202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3,878천원(2018년 예산 편성 중)

○ 산출근거

항목	예산액(천원)	산출근거
총액		1,003,878,000원
인건비 (529,303)	인건비 (529,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심리지원센터 3개소 15명 인건비 - 센터장 1,093,000*3명*12개월=39,348,000원 - 팀장 4,000,000*3명*12개월=144,000,000원 - 팀원 3,300,000*6명*12개월=237,600,000원 - 행정인력 2,636,000*3명*12개월=94,896,000원 - 17년 인건비*2.6%(전년대비 상승률)=13,459,000원
사업비 (474,575)	회의비 (1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지문위원회 : 100,000*6명*6회=3,600,000원 - 자문회의 진행경비 : 70,000*10명*3회=2,100,000원 - 직원 실무자회의 : 7,000*10명*3회=210,000원 - 사례회의비 등 5,090,000원
	일반운영비 프로그램비 (413,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무용품 및 인쇄비 등 8,741,000원 - 개인상담 등 175,307,000원 - 소집단 상담 및 교육 120,000,000원 - 대집단 상담 및 교육 등 : 109,853,000원
	홍보비 등 (49,6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및 SNS 구축운영 : 15,000,000원 - 홍보물 및 브로슈어 제작 : 25,674,000원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3,000,000원 - 기타 진행경비 : 6,000,000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조직담당관 2017. 9. 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2018년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신규 공모계획수립
(보건의료정책과 2017. 8. 31.)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김종금 (☎ 2133 - 7549)